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465 호

2002 년 7 월 19 일 금 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323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
및이의신청공고(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325호(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제정(안)입법예고공고)----- 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326호(재결신청서류공람공고(만월산터널축조공사))----- 45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323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논현동 및 고잔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2. 7.19 ~ 8.17(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2. 8.17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9)

2002. 7.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상액산정조서(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규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논현동	337-19	가옥	브럭기와	58.8	김춘자	인천 동구 송현동98	
			가추	목조선라이프	13.2			
			창고	브럭스레트	16.6			
			화장실	브럭스레트	3			
2	논현동	247-5	가옥	브럭스레트	49.5	이건복	남동 논현동 247-5	
			보일러실	브럭스레트	3.12			
			가추	스레트	2.28			
			창고	목조스레트	9.25			
3	논현동	86-2	공장	쇠파이프천막	422	정영운	연수구 옥련동61-11	
			가추	쇠파이프천막	77.35			
			담장	쇠기둥철판	25			
			목재담장		70			
			식당및세면	목조스레트	29			
4	논현동	60-13	가옥	목조천막	14.5	박춘자	남동 논현동 60-3	
			담장	목조그물망	21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32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입법예고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7.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제정취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행정수행으로 도시미관향상과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 o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제2조)
 - o 남동구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구성(제3조)
 - o 남동구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제4조)
 - o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제5조)
 - o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등(제6조)
 - o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등(제7조)
 - o 현수막지정계시대의 위탁등(제8조)
 - o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제9조)
 - o 옥외광고업의 신고(제10조)
 - o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제11조)
 - o 교육의 위탁(제12조)
 - o 수수료(제13조)

o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제14조)

o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2002. 8. 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참조: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바랍니다.(☎453-256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

제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2.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정사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함.

☐ 주요골자

- o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제2조)
- o 남동구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구성(제3조)
- o 남동구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제4조)
- o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제5조)
- o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등(제6조)
- o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등(제7조)
- o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위탁등(제8조)
- o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제9조)
- o 옥외광고업의 신고(제10조)
- o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제11조)
- o 교육의 위탁(제12조)
- o 수수료(제13조)
- o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제14조)
- o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제15조)

☐ 본문 “별첨참조”

☐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

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수는 3인 내지 5인으로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시조례를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이므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를의 위탁절차등)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 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시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

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
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①구청장은 시조례 제1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
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명칭·주소·위탁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 관리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게시시설
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게시 의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
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

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실시자를 위탁지정한 경우에는 교육의 실시시기·장소등을 위탁 받은 자가 별도로 지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1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 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

④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11조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7시간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 종사자의 자세 - 1시간	○ 신규로 옥외 광고업에 종사 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 옥외광고업 신고 전에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4시간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 종사자의 자세 - 1시간	○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4시간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 종사자의 자세 - 1시간	○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 영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옥외광고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규교육중 표시에 관한 사항 3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안 제13조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외의 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1,5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5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	20,000 1,000 5,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개	· 가로형간판 가향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나.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5,000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 2,000	
7. 에드벌론				
가. 공중에 띄우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20,000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비 고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전주·가로등주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5,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13,000 1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	
다. 비행기·선박양측면	대		10,000	
나. 차량 양측면	대		2,000	
11. 선전탑	개		5,000	
12. 아취광고물	개		5,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5,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6,000 1,500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 2,000	
15. 벽 보	매	• 50매당	5,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5,000	
17. 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시내·시외·전세 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 2,000	
7. 홍보탑광고	개		20,000	
8.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5,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입체형, 입체형문자·도형, 특수모형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며,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 (4)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며,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5)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1의 옥상간판에 준함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8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6조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단순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한다.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호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호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 (1) 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비 고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8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19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39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45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미만	80만원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 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5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7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9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15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29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0만원 +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비 고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9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15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19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8.1~10.0제곱미터 미만		4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미만	50만원 +10만원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9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15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19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8.1~10.0제곱미터 미만		45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미만	50만원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9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비 고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2만원 15만원 18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35만원 4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0만원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라. 전단	·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5만원	
나. 연 2회 위반자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5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를 (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비 고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 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2.1~3.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3.1~4.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4.1~5.0제곱미터 미만		45만원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 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55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65만원	
- 7.1~8.0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8.1~9.0제곱미터 이하		85만원	
- 9.1~10.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 제곱미터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110만원	
- 12.1~14.0제곱미터 이하		130만원	
- 14.1~16.0제곱미터 이하		145만원	
- 16.1~18.0제곱미터 이하		165만원	
- 18.1~20.0제곱미터 미만		185만원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미만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2.1~3.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3.1~4.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4.1~5.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55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65만원	
- 7.1~8.0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8.1~9.0제곱미터 이하		85만원	
- 9.1~10.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110만원	
- 12.1~14.0제곱미터 이하		130만원	
- 14.1~16.0제곱미터 이하		150만원	
- 16.1~18.0제곱미터 이하		170만원	
- 18.1~20.0제곱미터 미만		19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비 고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미만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 하는 애드빌론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0.6~1.0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48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55만원	
- 3.6~4.0제곱미터 이하		65만원	
- 4.1~4.5제곱미터 이하		80만원	
- 4.6~5.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110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130만원	
- 7.1~8.0제곱미터 이하		150만원	
- 8.1~9.0제곱미터 이하		170만원	
- 9.1~10.0제곱미터 미만		190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미만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빌론, 건물 4 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 로형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2.1~3.0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3.1~4.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4.1~5.0제곱미터 미만		48만원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55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65만원	
- 7.1~8.0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8.1~9.0제곱미터 이하		85만원	
- 9.1~10.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비 고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110만원	
- 12.1~14.0제곱미터 이하		130만원	
- 14.1~16.0제곱미터 이하		150만원	
- 16.1~18.0제곱미터 이하		170만원	
- 18.1~20.0제곱미터 미만		190만원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210만원	
- 21.1~30.0제곱미터 이하		230만원	
- 30.1~35.0제곱미터 이하		245만원	
- 35.1~40.0제곱미터 이하		260만원	
- 40.1~45.0제곱미터 이하		280만원	
- 45.1~50.0제곱미터 미만		290만원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미만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70만원+	
		1㎡당5만원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애드벌룬(공) 1개		4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이상		8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 탑·일기예보탑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80만원+	
		1㎡당5만원	
나. 교통안내소	· 가로형간판에 준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비 고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의시설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36만원+	
		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50만원+	
		1㎡당10만원	
(1) 유인 비행선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200만원+	
		1㎡당10만원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10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29만원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3.0~4.0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4.1~5.0제곱미터 미만		45만원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0만원	
		+5만원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illegible]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 체 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 년 . 월 .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호서식】

- 규 격 : 가로 6cm × 세로 8cm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인천광역시남동구

후 면

소 직 성	속 : 위 :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3 일
신 청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신 고 번 호	
⑦ 재교부 신청 사유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 광고업 신고필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2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7호서식】

옥 외 광 고 업 종 사 자 교 육 이 수 대 장

① 연 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60g/m²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		30 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 체 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326호

재결신청서류공람공고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만월산터널축조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토지수용법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2. 7.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민간투자사업 < 만월산터널축조공사 >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정비과
4. 열람기간 : 2002. 7. 20 - 2002. 8. 4
5. 열람장소 : 남동구청도시정비과
6.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는 신분은 도시정비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